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혜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4

발 의 자 : 정혜경 · 전종덕 · 윤종오
손 술 · 최혁진 · 황운하
이성윤 · 김 윤 · 용혜인
김준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구 북구에서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,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.

현행법은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, 이 중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.

특히 군사시설이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된 상황에서 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취락지역이 혼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주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또는 이전계획 반영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,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

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,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(안 제5조).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“지역”을 “지역.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범위 내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)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5조(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) 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한보호구역	2. -----
가. · 나. (생 략)	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다. 폭발물 관련 시설, 방공기지,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<u>지역 <단서 신설></u>	다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역. 다만, 범위 내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
라. · 마. (생 략)	라. · 마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